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함(안 제23조 신설).
-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국외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안 제91조의26 신설).
-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위험변동 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신설함(안 제91조의27 신설).

II. 검토의견

1.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안 제23조제2항)

안 제23조제2항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하

여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4제4항1)에 따라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에 대하여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시적인 익금불산입률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그러나, 개정안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4제4항에 따른 익금산입 규정과의 관계가 불명확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의 경우 중복 과세특례 방지²⁾ 등 「법인세법」에 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규정과의 관계가 불명확하여 지는 문제가 있는 점에서,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익금을 불산입하도록 하되, 익금불산입률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는 것

1) 「법인세법」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2·3. (생략)

⑤·⑥ (생략)

2)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계산식 생략)

② ~ ⑥ (생략)

⑦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생략)

으로 수정함.

또한, 개정안의 취지는 특정외국법인이 기존 소득을 모두 배당하여 해당 사업연도 말에 유보소득이 없어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경우에 익금 불산입의 특례를 주려는 것이고, 유보소득이 아닌 다른 사유로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특례 요건을 명확히 수정함.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3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 불산입 특례) ① (생 략)	제23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 불산입 특례) ① (생 략)
② 「법인세법」 제18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를 <u>적용할 때</u>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u>유보소득 및</u>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u>100분의 100에</u>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세법」 제18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도 <u>불구하고</u> ----- ----- <u>유보소득이 없어</u> - ----- ----- ----- <u>1</u> <u>00분의 100에</u> 해당하는 금액은 「 <u>법인세법</u> 」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 -----.
③ (생 략)	③ (생 략)

2. 환율변동위험회피파생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특례(안 제91조의 27제1항)

안 제91조의27제1항은 2026년에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고,³⁾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입법으로 위임하는 경에도 그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이어야 함.⁴⁾

그런데, 안 제91조의27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하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이라 한다)”에 투자한 경우를 과세특례로 규정하나, 법률 규정만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이 무엇인지 예측할 수 없는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파생상품의 대장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수정함.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91조의27(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① <u>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이라</u>	제91조의27(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① <u>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u>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3)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49 결정례

4)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바 결정례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	-----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제2호	-----
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만	-----
원을 한도로 한다.	-----.
1·2. (생략)	1·2. (생략)
②·③ (생략)	②·③ (생략)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한 체계·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심정희)